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501 판결 [건물철거, 토지인도 및 금원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31.

판결 선고 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'별지 1' 제1항 부동산의 표시란의 도면에 기재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①의 각 모서리를 연결하는 선 내 부분 중, '별지 2' 제3항 사진에 표시된 ⑦, ⑧, ⑨, ⑩, ⑪, ⑫, ⑦의 각 모서리를 연결하는 선 내 부분에 위치한 '별지 2' 제1항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'별지 1' 제1항 기재 토지 66.6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하세용

별지